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3469
----------	------

2026. 3. 4.
주택공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1. 제안경위

- 2026. 2. 9. 김길영 의원 발의(2026. 2. 12. 회부)

2. 제안이유

- 현행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정의를 관련 법령인 「청년기본법」 과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등과 상이하여 규정하고 있어 청년 정의를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조례」 에 명시된 규정을 인용하여 청년의 나이 기준을 통일되게 적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청년'의 정의를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에 따라 규정함 (안 제3조제1호)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 이 개정조례안은 ‘청년’의 정의를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와 일치 시킴으로써 시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민법」상 미성년자가 아닌 자로서 39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2. (생략)	제3조(용어의 정의) ----- -----.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현행과 같음)

- 현행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이하 ‘청년주거 기본 조례’)는 청년의 정의를 “「민법」상 미성년자가 아닌 자로서 39세 이하인 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민법」 제4조1)에 따라 ‘미성년자가 아닌 자’를 19세 이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인용하려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이하 ‘청년 기본 조례’)는 청년을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개정조례안은 청년의 연령 범위는 유지하되, 정의의 방식을 일원화하려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이 개정조례안과 같은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472), 「서울특별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471)이 발의되어 있으며2), ‘청년’의 연령 범위를 이 조례와 동일하도록 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454)이 발의되었음.

1)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2) 이 개정조례안과 일부 자구의 차이가 있음.

<제334회 임시회 ‘청년’정의 관련 발의 현황>

의안 번호	조례명	청년 정의관련 개정사항		발의 의원
		현행	개정	
3469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법」상 미성년자가 아닌 자로서 39세 이하인 자	청년 기본 조례를 따름	김길영 의원
3471	서울특별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년기본법」,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그 밖의 법령에 따름	청년 기본 조례를 따름	김길영 의원
3472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4 ³⁾ 를 따름	청년 기본 조례를 따름	김길영 의원
3453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년의 범위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시행령을 따름 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시행령을 따르되, 시장이 인정시 만 39세 까지	이효원 의원

- 청년에 관한 권리와 책임 등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청년기본법」 에서는 청년의 연령 범위를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면서,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⁵⁾.
- 서울시의 경우, 청년 기본 조례⁶⁾는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정하고 있으며, ‘주거지원’과 관련된 2개 조례 역시 그 대상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정하고 있으나 표현방식은 상이한 실정임.

3) 현재 없는 조항으로, 現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는 “청년창업기업”을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는 청년을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으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함.

5) 「청년기본법」에서는 ‘19세 이상 34세’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40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간 정하고 있는 청년 연령이 상이함에 따라 각 정책 추진에 있어 대상 연령을 조정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확인됨(제371회국회(정기회) 제1차 정무위원회 “청년정책기본법안, 청년기본법안, 청년발전기본법안, 청년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청년기본법안, 청년발전지원법안 검토보고”(2019.9.) 참고)

6) 청년 기본 조례는 제정(2015.1.2.) 당시 舊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을 따르도록 하고 있었으나, 「청년기본법」의 제정(2020.2.4. 제정, 2020.8.5. 시행)으로 「청년기본법」을 따르도록 개정(2020.3.26.개정·시행)하였다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대다수의 청년 정책이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통일적인 운영을 위해서 현행과 같이 개정(2020.10.5. 개정·시행)함(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참고)

<서울시 각 조례별 청년 연령 범위(예시)>

조례명	청년 관련 정의	비고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	-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민법」상 미성년자가 아닌 자로서 39세 이하인 자	금회 개정 대상 → 청년 기본 조례 따름
서울특별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청년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등을 따름	금회 개정 대상 → 청년 기본 조례 따름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4에 따름	금회 개정 대상 → 청년 기본 조례 따름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름	금회 개정 대상 →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만 39세까지 포함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19세 이상 39세 이하로서 미혼인 무주택자	-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	-
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학술 논문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	-
서울특별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노동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
서울특별시 청년 장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라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	-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름	-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사람	-

- 종합하면, 개정조례안은 청년의 정의를 청년 기본 조례와 일원화함으로써 청년주거 정책의 변동 없이 청년 정책 대상의 통일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주택실 소관 청년주거 정책 종류 및 추진근거>

연번	소관부서	사업명	추진 근거
1	주택정책과	청년 월세지원	주거기본법 청년기본법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2	주택정책과	신혼부부, 청년 임차보증금 이차지원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3	임대주택과	한지붕 세대공감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조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4	임대주택과	청년 매입임대주택 사업	공공주택특별법
5	전략주택공급과	청년 안심주택 공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의안심사지원팀장	강대만	02-2180-8204
입 법 조 사 관	조윤길	02-2180-8208